

## 2022년 창원레포츠파크 제5회 이사회 의 결 결 과

○ 레포츠관련 수탁사업 승인의 건	원안가결
○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원안가결
○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관련 관련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원안가결
○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원안가결
○ 복리후생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원안가결
○ 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원안가결
○ 물품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1호
의안제목	레포트스 관련 수탁사업 승인의 건
의결결과	원안가결

# 이사회부의안

## 1. 제안이유

### □ 레포트스 관련 사업 위·수탁을 위한 이사회 승인

- 관련근거

#### 《 주요내용 》

- 공단 정관 제24조(의결사항)제1항제8호
  - 대행사업의 수탁, 위탁 등에 관한 사항
- 공단 이사회운영규정 제7조(의결사항)제1항제7호
  - 중요한 대행사업의 수탁, 위탁에 관한 사항

## 2.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경륜 규제강화·매출감소·경쟁력 약화 등 경영환경 변화 대응
- 레포트스 사업영역 확대로 사업 다각화 달성 및 미래성장 동력 발굴
- 창원시의회·행안부 등 경륜사업 외 신규 사업 진출 요구 이행

### □ 그간 추진사항

- 공단 사명 개정 및 지자체 위탁 레포트스 사업 신설 조례개정 : '20.12월
  - 제100회 창원시의회 창원경륜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의결
- 신규 수탁 사업 발굴 조사·검토·추진 : '21.1 ~ '22.2월
- 창원시장 업무보고 : '22.2.24.
- 신규 수탁 사업 유치 방안 통보(창원시 ⇒ 공단)
  - 만날공원 인공암벽장 관리운영 방안 통보(창원레포트스파크 수탁) : '22.3.30.
  - 달천공원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방안 통보(창원레포트스파크 수탁) : '22.4.6.
- 경제적 타당성 조사용역 시행 및 최종보고회 개최 : '22.4 ~ 6월
- 신규 수탁사업 관리운영계획 수립 및 제출(공단 ⇒ 市) : '22.7.23.

## □ 주요 수탁사업

### ○ 만날공원 인공암벽장

- 위 치 :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산175-5번지 일원
- 규 모 : 1,467㎡[실외3(리드, 스피드, 불더링), 실내2(리드, 불더링)]
- 준 공 : '22.11월(예정) \*레미콘 파업, 자재공급 지연 등으로 공기연장

### 《 경제적 타당성조사 주요내용 》

- 운영방식 : 전국 43개 중 공공운영 32개(74.4%)
  - ※ 경남4개(김해, 거제, 통영, 사천) : 공공운영
- 운영인력 : 4명(팀장1, 사무1, 안전강사요원2)
- 수 지 율 : 23.5%(전국평균 15.97%대비 7.53% 높음)
  - ※ 레포츠시설 전담팀 신설 : 타 기관 체육시설부서 운영, 공단 경륜, 누비자 사업으로 체육시설부서 전무, 오토캠핑장과 연계한 전담팀 신설 필요

### ○ 달천공원 오토캠핑장

- 위 치 : 창원시 의창구 북면 외감리 산112-2번지 일원
- 시 설 : 텐트26, 카라반4, 방갈로4, 관리소, 취사장, 샤워장, 매점 등
- 운 영 : 민간위탁(경쟁입찰)
  - ※ 現 수탁자 : 김은령( '18.04.01. ~ '22.11.28. / 연32,756천원 납부)

### 《 경제적 타당성조사 주요내용 》

- 운영방식 : 경남 13개 중 공공운영 9개(69.2%)
  - ※ 양산2, 밀양3, 사천1, 거제1, 합천2 : 공공운영
- 운영인력 : 6명(사무1, 주간2, 야간2, 초단시간1)
- 수 지 율 : 116.4%(現 32,756천원대비 15.01% 증가한 37,674천원 市세입예상)

## □ 추진의의와 기대효과

- 시의회, 행안부 등 사업다각화 요구 : 행정사무감사, 경영개선명령 ⇒ 이행
- 레포츠사업 신규 진출로 미래 성장 동력 발굴 및 비전 추진 도모
  - 규제강화, 매출감소, 고객이탈 등 사양 산업인 경륜 중심사업 탈피
  - 인공암벽장, 오토캠핑장 수탁운영으로 향후 레포츠시설 수탁 유치 수월
- 기존인력 재배치 등으로 경륜사업 경영수지 개선효과 발생

## □ 향후 추진계획

- 인공암벽장 준공 : '22.11월(예정)
- 인공암벽장 및 오토캠핑장 관련 조례 제·개정 : '22.12월
  - ※ 인공암벽장 : 조례제정 / 오토캠핑장 : 조례개정
- 위·수탁 계약체결(市 ⇔ 창원레포츠파크) : '22.12월 ~ '23.1월
- 수탁사업(인공암벽장 및 오토캠핑장) 개장 : '23.3월(예정)

의안번호	제2호
의안제목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결과	원안가결

# 이 사 회 부 의 안

## 1. 추진배경

### □ 2022년도 경륜선수 상금 부족분 증액 편성(1,119백만원)

#### ○ 선수상금 미확보 8회차분 증액

- 당초 선수상금 44회차 편성(6,092백만원)하였으나, 회계연도 중 각종 사업비 절감분을 이용하여 8회차분(1,119백만원) 재원 마련

#### 2022년도 선수상금

#### ● 2022년 연간 선수상금 소요예산액 : 7,284백만원(53회차)

- 당초예산 선수상금 편성 : 6,092백만원(44회차)
- **선수상금 부족예산 증액 : 1,119백만원(8회차)**

※ 나머지 1회차 2일 부족분(73백만원)은 12월 결산추경에 편성 예정

### □ 발매전산 매출 미합산 사고금 신규편성(19백만원)

#### ○ 고객 환급금 과다지급으로 공단부담금 발생

(단위: 천원)

구분	사고금 계 (D=A-B-C)	사고 환급금 (A)	정상 환급금 (B)	고배당 세금차액 (C)	비 고
총계	19,152,220	107,198,280	84,830,040	3,216,020	
창원	7,447,380	45,103,300	36,424,920	1,231,000	
부산	11,704,840	62,094,980	48,405,120	1,985,020	

#### ○ 발생원인

- 발매마감 명령어 입력 시간과 발매마감 방송화면 표출 시간 차이 발생(표출지연\*)

\*발매마감 전산명령어를 입력하면 방송화면에 실시간으로 "발매마감"으로 표출이 되어야 정상이지만, 일시적 통신장애로 인하여 발매마감 전산명령어를 정상 입력하였음에도 방송화면에 실시간으로 표출되지 않자 발매마감 명령어를 재입력 함. 명령어 재입력이 바로 다음 경주의 발매마감으로 인식되어 사고발생

#### ○ 조치내용

- 발매전산 특수네트워크 교체작업 및 S/W 업그레이드 작업 완료 : '22. 7월
- 발매전산 비상상황 대비 추가메뉴얼 비치 완료 : '22. 7월
- 발매전산시스템 운영관리 체계 재정비 완료 : '22. 7월

□ 전자카드 노후 단말기 교체구입 신규편성(34백만원)

- 김해지점 전자카드 노후화(내용연수)로 인한 장애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발매 안정성 확보
- 사업기간 : 2022. 11 ~ 12월
- 사업내용 : 일체형 컴퓨터 20대 구입 【1,710천원 × 20대 = 34,200천원】

□ 발매투표소 무인발매창구(유인→무인) 설치공사 신규편성(23백만원)

- 2023년 상반기 이후 감소할 발매인력 대응 방안으로 발매투표소 무인화 추진
- 사업기간 : 2022. 11 ~ 12월
- 사업내용 : 무인투표소 5개소 → **7개소 확대 공사**
  - 2개 투표소(2-2투표소, 3-1투표소) 내 11개 창구 → 무인화 시행
- 소요예산 : 23,100천원 【11개소 공사비 19,800천원, 전기공사 3,300천원】

□ 2022년도 경영평가 평가급 부족분 증액(97백만원)

- 당초예산 '라'등급(40%) → 평가결과 '**다**'등급(80%)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따라 실시한 경영평가 결과로 등급이 결정되며, 지급률은 지급률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

<인센티브 평가급>

등급	기관장	임원(급)	직원	비고
가	400~301%	350~251%	200~180%	
나	300~201%	250~181%	150~131%	
<b>다</b>	<b>200~100%</b>	<b>180~100%</b>	<b>100~80%</b>	<지급률 결정(창원시)> - 이 사 장 : 101% - 상임이사 : 100% - 직 원 : 80%
라	0% (익년도 연봉 동결)	0% (익년도 연봉 동결)	50~30%	
마	0% (익년도 연봉 10-5% 삭감)	0% (익년도 연봉 10-5% 삭감)	0%	

## 2. 주요내역

### □ 예산규모(총괄)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액(A)	기정예산액(B)	증감액(A-B)
합 계(A+B)		30,100,150	30,100,150	0
특별회계	소 계(A)	23,530,000	23,530,000	0
	경륜운영 대행사업비	21,500,000 (경주) 13,380백만원 (비경주) 8,120백만원	21,500,000 (경주) 12,800백만원 (비경주) 8,700백만원	0
	기타경륜 대행사업비	2,030,000	2,030,000	0
일반회계	소 계(B)	6,570,150	6,570,150	0
	공영자전거 대행사업비	6,200,000	6,200,000	0
	주민참여예산 대행사업비	100,000	100,000	0
	도비 보조금(사이클운영)	270,150	270,150	0

### □ 대행사업비 증·감액 추경편성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세부내역별	증액	감액	증·감	재원조달 방법
합 계(A+B)		1,629,768	1,629,768	0	· 기정예산 증·감 조정
특별회계(A)	경륜운영	1,276,398	1,276,398	0	· 기정예산 증·감 조정
	기타경륜	37,370	37,370	0	· 기정예산 증·감 조정
일반회계(B)	공영자전거	46,000	46,000	0	· 기정예산 증·감 조정
	도비보조금 (사이클팀 운영)	270,000	270,000	0	· 기정예산 증·감 조정(과목경정)

#### ○ 경륜운영 대행사업비(증·감액 내역)

(단위: 천원)

과 목					예산액 (A)	기정예산액 (B)	금회추경액 (A - B)	주요 증감내역
관	항	세항	목	세목				
총 계(A+B)					21,500,000	21,500,000	0	
700	사업비용(A)				21,419,457	21,409,600	9,857	
	710	영업비용			21,356,165	21,382,600	△26,435	
		722	대행사업비		20,999,527	21,006,280	△6,753	
			100	인건비	7,892,615	8,287,230	△394,615	
			101	인건비	6,532,056	6,843,156	△311,100	
			01	보수	3,519,914	3,671,604	△151,690	· 일반직 직무수당 불용액 감액(△199,500천원) ·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 불용액 감액(△42,290천원) · 일반직(호봉제 적용대상) 보수 부족분 증액(77,000천원) · 일반직(연봉제 적용대상) 보수 부족분 증액(13,100천원)
			02	기타직보수	248,986	280,846	△31,860	· 연봉계약직 급여 및 수당 등 불용액 감액(△31,860천원)

(단위: 천원)

과 목				예산액 (A)	기정예산액 (B)	금회추경액 (A - B)	주요 증감내역
관	항	세항	세목				
			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745,156	2,875,706	△130,550	· 공무원 급여 불용액 감액(△60,000천원) · 휴일근무수당, 가족수당 등 불용액 감액(△112,500천원) · 명절휴가비 등 각종 수당 부족분 증액(41,950천원)
			04 기간제근로자보수	18,000	15,000	3,000	· 심판보조원 아르바이트 임금 부족분 증액(3,000천원)
			107 퇴직급여	859,767	1,029,980	△170,213	
			03 퇴직급여	859,767	1,029,980	△170,213	·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수당 불용액 감액(△170,213천원)
			109 평가급및성과급등	500,792	414,094	86,698	
			01 일반직평가급등	500,792	414,094	86,698	· 행안부 경영평가 결과('다'등급)에 따른 예산부족분 증액(86,698천원) · (당초예산) '라'등급 40% → (최종결과) '다'등급 80%
			200 물 건 비	5,062,626	5,616,592	△553,966	
			201 일반운영비	3,469,772	3,903,894	△434,122	
			01 사무관리비	276,238	322,063	△45,825	· 운영 소모품 구입비 집행잔액 감액(△9,104천원) · 출주표 제작비 집행잔액 감액(△18,100천원) ·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 집행잔액 감액(△1,350천원) · 정기간행물 구독비 등 각종 집행잔액 감액(△17,271천원)
			03 행사운영비	39,896	80,840	△40,944	· 직원 체육대회 및 한마음 화합행사 집행잔액 감액(△20,000천원) · 특별경륜 등 고객사은행사비 집행잔액 감액(△20,944천원)
			11 지급수수료	1,581,958	1,647,123	△65,165	· 안전·보건관련 대행수수료 집행잔액 감액(△11,003천원) · 청소관리 용역비 집행잔액 감액(△20,000천원) · 경주운영 착순·심판판정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집행잔액 감액(△34,162천원)
			12 교육훈련비	25,942	31,660	△5,718	· 윤리안전감사인원 등 각종 교육훈련비 집행잔액 감액(△5,718천원)
			13 임 차 료	311,918	320,087	△8,169	· 부서별 사무기기 임차료 집행잔액 감액(△3,212천원) · 건물 월 임차료 등 집행잔액 감액(△4,957천원)
			15 복리후생비	614,881	658,962	△44,081	· 하절기 경주운영 간식비 집행잔액 감액(△20,000천원) · 선수 및 심판 유니폼·헬멧구입비 집행잔액 감액(△15,595천원) · 급량비 등 집행잔액 감액(△8,486천원)
			16 광고선전비	18,172	31,500	△13,328	· 각종 광고선전비 집행잔액 감액(△13,328천원)
			21 공공요금및제세	587,840	788,884	△201,044	· 사감위 중독예방치유 부담금 집행잔액 감액(△30,124천원) · 교통유발부담금 집행잔액 감액(△10,000천원) · 경륜선수 단체상해·연금·산재·재활지원금 등 집행잔액 감액(△132,739천원) · 문자발송서비스 이용료 등 각종 불용액 감액(△28,181천원)
			22 차량·선박비	11,759	21,607	△9,848	· 차량 유류비 집행잔액 감액(△5,886천원) · 차량 정비비 등 집행잔액 감액(△3,962천원)
			202 여 비	15,000	20,000	△5,000	
			01 국내여비	15,000	20,000	△5,000	· 국내여비 절감분 감액(△5,000천원)
			203 업무추진비	15,097	24,800	△9,703	
			07 사업업무추진비	15,097	24,800	△9,703	· 사업업무추진비 절감분 감액(△9,703천원)

(단위: 천원)

관	항	과 목		예산액 (A)	기정예산액 (B)	금회추경액 (A - B)	주요 증감내역	
		세항	세목					
			204	직무수행경비	141,225	145,740	△4,515	
			02	직급보조비	141,225	145,740	△4,515	· 일반직 직급보조비 불용액 감액(△1,245천원) · 일반직 직책수행비 불용액 감액(△3,270천원)
			206	재 료 비	307,973	374,032	△66,059	
			01	일반재료비	307,973	374,032	△66,059	· 선수식당 운영 식재료 구입 불용액 감액(△40,000천원) · 커피 자동판매기 재료(원두 등) 불용액 감액(△15,000천원) · 청소관련 용품 구입 등 집행잔액 감액(△11,059천원)
			207	연구개발비	27,800	30,000	△2,200	
			01	연구용역비	27,800	30,000	△2,200	· 공단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용역비 집행잔액 감액(△2,200천원)
			214	수선유지교체비	217,915	227,600	△9,685	
			05	수선유지비	217,915	227,600	△9,685	· 전산기계 등 수선유지비 집행잔액 감액(△9,685천원)
			215	동 력 비	833,926	845,926	△12,000	· 전기요금 집행잔액 감액(△12,000천원)
			217	관서업무비	33,918	44,600	△10,682	
			01	정원가산 업 무 비	13,240	14,240	△1,000	· 정원가산업무비 절감분 감액(△1,000천원)
			02	부서업무비	20,678	30,360	△9,682	· 부서업무비 절감분 감액(△9,682천원)
			300	경상이전	8,043,786	7,101,958	941,828	
			301	일반보전금	7,324,549	6,239,141	1,085,408	
			10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 상 금	0	50,000	△50,000	· 과목경정 - 당초 편성된 영업비용 5천만원을 감액하여 <b>영업외비용</b> 으로 재편성
			12	기 타 보 상 금	7,324,549	6,189,141	1,135,408	· 2022년 선수상금 부족분 증액(1,118,515천원) · 당초 44회차 편성(62억원) → 8회차분 부족(11억원) · 발매전산사고 공단부담금 신규편성(19,153천원) · 경륜선수 자전거 등 파손수리 보상비 등 집행잔액 감액 (△2,260천원)
			303	포상금	2,500	7,500	△5,000	
			01	포 상 금	2,500	7,500	△5,000	· 부패행위 신고 및 제안제도 포상금 집행잔액 감액 (△5,000천원)
			304	연금부담금등	700,037	838,617	△138,580	
			01	연 부 담 금	262,872	350,072	△87,200	· 국민연금부담금 집행잔액 감액(△87,200천원)
			02	국민건강 보 부담금등	437,165	488,545	△51,380	· 국민건강보험부담금(요양보험포함) 집행잔액 감액 (△42,200천원) · 고용보험금 집행잔액 감액(△8,500천원) ·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집행잔액 감액(△680천원)
			726	상품매입비	356,638	376,320	△19,682	
			233	상품매입비	356,638	376,320	△19,682	· 자동판매기 음료구입비 집행잔액 감액(△19,682천원)
			770	영업외비용	53,292	2,000	51,292	
			779	기타영업외비용	53,292	2,000	51,292	
			301	일반보전금	50,000	0	50,000	
			10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 상 금	50,000	0	50,000	· 과목경정 - 당초 편성된 영업비용 5천만원을 감액하여 <b>영업외비용</b> 으로 재편성
			318	기부금	3,292	2,000	1,292	· 김해지역 취약계층지원 집행잔액 감액(△708천원) · 창원지역 취약계층지원 신규편성(2,000천원)
			790	법인세등	0	15,000	△15,000	
			791	법인세등	0	15,000	△15,000	
			320	법인세등	0	15,000	△15,000	· 법인세 불용액 감액(△15,000천원)

(단위: 천원)

과 목				예산액 (A)	기정예산액 (B)	금회추경액 (A - B)	주요 증감내역
관	항	세항	세목				
<b>200 자본적지출(B)</b>				<b>80,543</b>	<b>90,400</b>	<b>△9,857</b>	
	230	유형자산취득		65,420	73,400	△7,980	
		237	공기구비품	60,420	68,400	△7,980	
			405 자산취득비	60,420	68,400	△7,980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420	68,400	△7,980	· 「네트워크 스위치 시스템」 구입취소에 따른 불용액 감액(△6,100천원) ·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한 물품구입 불가 · 문서세단기 구입 등 각종 물품취득 집행잔액 감액(△1,880천원)
	250	무형자산및기타비유동자산취득		11,123	13,000	△1,877	
		253	소프트웨어	11,123	13,000	△1,877	
			405 자산취득비	11,123	13,000	△1,877	
			11 정보화 시스템 취득비	11,123	13,000	△1,877	· 「물품관리시스템」 구입 집행잔액 감액(△1,877천원)

○ 기타경률행대행사업비(증·감액 내역)

(단위: 천원)

과 목				예산액 (A)	기정예산액 (B)	금회추경액 (A - B)	주요 증감내역
관	항	세항	세목				
<b>총 계(A+B)</b>				<b>2,030,000</b>	<b>2,030,000</b>	<b>0</b>	
<b>700</b>	<b>사업비용(A)</b>			17,000	19,000	△2,000	
	710	영업비용		17,000	19,000	△2,000	
		722	대행사업비	17,000	19,000	△2,000	
			214 수선유지교체비	17,000	19,000	△2,000	
			05 수선유지비	17,000	19,000	△2,000	· 선수동 시설환경개선공사 집행잔액 감액(△2,000천원)
<b>200</b>	<b>자본적지출(B)</b>			2,013,000	2,011,000	2,000	
	230	유형자산취득		2,013,000	2,011,000	2,000	
		233	건물	1,817,500	1,828,000	△10,5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817,500	1,828,000	△10,500	
			01 시설비	1,817,500	1,828,000	△10,500	· 2층 고객식당 임대전환 기반공사 집행잔액 감액 (△30,800천원) · 김해지점 노후CCTV 교체설치공사 집행잔액(△300천원) · 노후 냉난방 개선공사비 집행잔액 감액(△2,500천원) · 무인발매창구 설치공사(11개소) 신규편성(23,100천원)
	234	구축물		6,230	8,000	△1,770	
			401 시설비및부대비	6,230	8,000	△1,770	
			01 시설비	6,230	8,000	△1,770	· 경륜장 주차차단기 자동화 제어시스템 설치공사 집행잔액 감액(△1,770천원)
	237	공기구비품		189,270	175,000	14,270	
			405 자산취득비	189,270	175,000	14,270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9,270	175,000	14,270	· 「경륜경주 출발시스템」 구입 집행잔액 감액(△18,930천원) · 선수동 시설환경개선공사 등 물품 구입 집행잔액 감액 (△1,000천원) · 전자카드 노후화 단말기교체 구입(20대) 신규편성 (34,200천원)

○ 공영자전거 대행사업비(증·감액 내역)

(단위: 천원)

과 목				예산액 (A)	기정예산액 (B)	금회추경액 (A - B)	주요 증감내역
관	항	세항	세목				
총 계(A+B)				6,200,000	6,200,000	0	
700	사업비용(A)			5,736,500	5,736,500	0	
	710 영업비용			5,736,500	5,736,500	0	
		722 대행사업비		5,736,500	5,736,500	0	
		100	인건비	3,786,804	3,786,804	0	
		101	인건비	3,387,453	3,397,453	△10,000	
		02	기타직보수	129,079	93,079	36,000	· 연봉계약직 보수 부족분 증액(36,000천원) · '22.4월 인사발령에 따른 부족분(경륜 특별회계 연봉계약직 1명 → 일반회계 공영으로 발령)
		03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2,762,557	2,808,557	△46,000	· 공무원 휴일근무 수당 불용액 감액(△55,000천원) · 공무원 명절휴가비 부족분 증액(9,000천원)
		109	평가급및성과급등	66,600	56,600	10,000	
		01	일 반 직 평가급등	66,600	56,600	10,000	· 행안부 경영평가 결과('다'등급)에 따른 예산부족분 증액(10,000천원) · (당초예산) '라'등급 40% → (최종결과) '다'등급 80%
		200	물 건 비	1,568,516	1,568,516	0	
		201	일반운영비	951,346	951,346	0	
		11	지급수수료	152,653	152,653	0	· 누비자운영 성과분석 용역수수료 집행잔액 감액(△6,000천원) · 신규직원 공개채용 위탁수수료 신규편성(6,000천원) · 일반직 직원 퇴사자 발생('22.10월말)에 따른 신규채용
200	자본적지출(B)			463,500	463,500	0	· 자본예산 증감내역 없음

○ 사이클팀운영 도비보조금 (증·감액 내역)

(단위: 천원)

과 목				예산액 (A)	기정예산액 (B)	금회추경액 (A - B)	주요 증감내역
관	항	세항	세목				
총 계(A+B)				270,150	270,150	0	
700	사업비용			270,150	270,150	0	
	710 영업비용			0	270,000	△270,000	
		722 대행사업비		0	270,000	△270,000	
		301	일반보전금	0	270,000	△270,000	
		10	예술단원 · 운동부등 보 상 금	0	270,000	△270,000	· 과목경정 · 당초 편성된 영업비용 270,000천원을 감액하여 <b>영업외비용</b> 으로 재편성
	779 영업외비용			270,150	150	270,000	
		779 기타영업외비용		270,150	150	270,000	
		301	일반보전금	270,000	0	270,000	
		01	예술단원 · 운동부등 보 상 금	270,000	0	270,000	· 과목경정 · 당초 편성된 영업비용 270,000천원을 감액하여 <b>영업외비용</b> 으로 재편성
200	자본적지출(B)			0	0	0	· 자본예산 편성내역 없음

의안번호	제3호
의안제목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결결과	원안가결

# 이 사 회 부 의 안

---

## 1. 제안이유

---

### 근무성적 평정시기 변경

- 퇴직(상·하반기 정년 및 공로연수)과 정기인사 시기의 일치로 업무추진 연속성 제고
  - 정기 인사발령 시기를 1월 및 7월로 조정
- 경상남도·창원시 공무원 및 타 공단과 평정시기 일치로서 업무연계 제고

## 2. 주요내용

---

### 인사규정 제28조제1항 근무성적의 평정시기 변경

- 당초) 6월 말일과 12월 말일 ⇒ 변경) 4월 말일과 10월 말일

## 3. 참고내용

---

### 신·구 조문 대비표

### 지방공무원 및 타 공기업 근무성적 평정시기 관련 참고사항(붙임참조)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 제3조(평정시기) ③ 제2항에 따른 정기평정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2회 실시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정 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고**, 실시 횟수를 연 1회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정 대상기간은 정기평정을 연 2회 실시하는 때에는 6개월로 하고 연 1회 실시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통합지침(행안부) >**

**V. 근무성적평정 등**

- 4. 근무성적평정 시기 자율화

**※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 운영예시**

- **년 1회 근무평정 실시 : 평정기준일 12. 31**  
- 해당년도 1. 1 ~ 12. 31
- **년 2회 근무평정 실시 : 평정기준일 6. 30, 12. 31**  
- 상반기 평가 : 1. 1 ~ 6. 30(6개월)  
- 하반기 평가 : 7. 1 ~ 12. 31(6개월)
- **년 2회 근무평정 실시 : 평정기준일 임의지정(ex 4. 30 / 10. 30)**  
**《시행 1년차》**  
- 상반기 평가 : 해당년도 1. 1 ~ 4. 30(4개월)  
- 하반기 평가 : 해당년도 5. 1 ~ 10. 30(6개월)  
**《시행 2년차 이후》**  
- 상반기 평가 : 전년도 11. 1 ~ 해당년도 4. 30(6개월)  
- 하반기 평가 : 해당년도 5. 1 ~ 해당년도 10. 30(6개월)

**※ 적용시기 : 평정시기를 달리 지정할 경우, 1년 이후부터 적용함**

**< 창원시설공단 >**

- 제28조(근무성적의 평정) ① 직원의 인사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4월 말일과 10월 말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한다.

**<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

- 제28조(근무성적의 평정) ① 직원의 인사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4월 말일과 10월 말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한다.

##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6월 말일과 12월 말일”을 “4월 말일과 10월 말일”로 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하며, 제28조제1항은 2023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근무성적의 평정) ① 직원의 인사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u>6월 말일과 12월 말일</u> 을 기준으로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한다.	제28조(근무성적의 평정) ① 직원의 인사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u>4월 말일과 10월 말일</u> 을 기준으로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한다.

의안번호	제4호
의안제목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관련 관련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결결과	원안가결

# 이 사 회 부 의 안

---

## 1. 제안이유

---

###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권고 : 국민권익위원회

- 채용 시 구직자 부담의 신체검사서를 여전히 요구함에 따라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관행 개선
  - ※ 채용신체검사 운용 289개기관 중 225개 기관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요구 (2021. 4월 실태조사)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정해진 채용서류\* 외에 구직자에게 채용 심사비용 부담 원칙적 금지
  - \* 「채용신체검사서」는 동 법에서 말하는 ‘채용서류’라고 보기 곤란하므로 신체검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적절(2021. 4월, 고용노동부)
- 건강검진과 채용신체검사 중복에 따른 비효율

## 2. 주요내용

---

### 연봉계약직직원 인사관리규정

- 제10조(채용구비서류) 개정 : 인사규정시행내규 준용

### 기능인재추천채용규정

- 제12조(신체검사) 전부 개정
  - 당 초)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 준용
  - 변 경) 건강상태 점검 시 필요한 비용은 공단이 부담. 단, 「건강검진 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결과 대체 가능

## 3. 참고내용

---

### 신·구 조문 대비표

### 인사규정시행내규 참고자료(붙임참조)

## 붙임

### ○ 인사규정시행내규

#### < 주요내용 >

##### ○ 제13조(신체검사)

- ① 공단은 채용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건강상태를 점검 할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은 공단이 부담한다. 단,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결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 ② 신체검사 결과 직무수행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임용을 연기하거나 또는 임용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연봉계약직직원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연봉계약직직원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본문 중 “다음 각호와 같다”를 “인사규정시행내규에 따른다”로 하고  
제1항부터 제9항까지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채용구비서류) 연봉계약직직원의 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u>다음 각호와 같다.</u></p> <p>① <u>응시원서 또는 이력서</u></p> <p>② <u>주민등록등(초)본</u></p> <p>③ <u>최종 학력증명서</u></p> <p>④ <u>자격증 및 면허증(해당자)</u></p> <p>⑤ <u>경력증명서(해당자)</u></p> <p>⑥ <u>삭 제</u></p> <p>⑦ <u>신원진술서</u></p> <p>⑧ <u>채용 신체검사서</u></p> <p>⑨ <u>사진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u></p>	<p>제10조(채용구비서류) 연봉계약직직원의 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u>인사규정시행내규에 따른다.</u></p> <p><u>① ~ ⑨ (삭 제)</u></p>

## 기능인재추천채용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기능인재추천채용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신체검사) 기능인재를 선발할 때에는 인사규정시행내규에 따른다.

### 부 칙

이 규정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신체검사) <u>기능인재를 선발할 때에는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의2의 규정, 정관 또는 인사규정 등을 준용하여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신체검사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선발될 수 없다.</u></p>	<p>제12조(신체검사) <u>기능인재를 선발할 때에는 인사규정 시행내규를 따른다.</u></p>

의안번호	제5호
의안제목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의결결과	원안가결

# 이 사 회 부 의 안

---

## 1. 제안이유

---

### 근무성적 평정시기 변경

- 일반직과 동일하게 근무성적 평정시기 변경

### 임·단협 결과 반영

-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의 처우개선으로 일반직과의 차별 철폐를 통한 조직 일체감과 사기진작 도모

### 2022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기준 반영

- 특정업무수행경비 지급대상 확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업무담당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정액 인센티브 지급

## 2. 주요내용

---

### 제42조제1항 근무성적의 평정시기 변경

- 당초) 6월 30일과 12월 31일 ⇒ 변경) 4월 말일과 10월 말일

### 제68조제4항 진단서 첨부 일수 명확화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취업규정과 동일 적용

### [별표 6] 수당지급기준 중 가족수당 항목 추가

- 일반직과 동일하게 지급하되, 근무일수에 따라 비례 적용
  - 배우자 월 4만원
  - 첫째 자녀 월 2만원, 둘째 자녀 월 6만원, 셋째 이후 자녀는 자녀수와 관계없이 1명당 월 10만원
  -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1명당 월 2만원

### [별표 6] 수당지급기준 중 특정업무수행경비 항목 추가

- 특정업무수행경비 지급대상 확대
  - 안전보건관리업무 담당직원(월80,000원) 추가

### 3. 참고내용

- 신·구 조문 대비표
- 신·구 별표 대비표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기준 참고자료(붙임참조)

#### 붙임

- 2022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기준(행안부)

#### < 주요내용 >

2022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2022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기준
<p>&lt; p67 &gt; 지방공사·공단 2-5 특정업무수행경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편성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결산·계약·감사·노사·보상 업무·경영평가실무담당직원(과장 또는 팀장 이하)에 대하여 월 8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li> </ul> </li> </ul>	<p>&lt; p67 &gt; 지방공사·공단 2-5 특정업무수행경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편성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결산·계약·감사·노사·보상 업무·<u>안전보건관리업무</u>·경영평가실무 담당직원(과장 또는 팀장 이하)에 대하여 월 8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li> </ul> </li> </ul>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 병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7조의2제7항 본문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 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중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4월 말일과 10월 말일”로 한다.

제68조제4항 중 “월간 2일, 연간 7일을 초과한”을 “월간 2일 이상, 연간 7일 이상”으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하며, 제42조제1항은 2023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부터 적용한다.

[별표 6]

경륜 및 공영자전거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수당지급기준

(단위: 원)

구 분	대 상	지급기준	비 고
연 차 수 당	소정근로일 80% 근무자	·가×연차일수×소정근로시간/40	·공통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	·가×개근월수×소정근로시간/40	·공통
주 휴 수 당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는 1일의 주휴수당 발생	·가×소정근로시간/40	·공통
출 납 수 당	수납원, 회계업무수행자	·월 20,000원	·공통
가족수당	공무직	·보수규정 제43조(가족수당) 준용(근무일수별 비례 적용) - 주5일 : 일반직과 동일 - 주4일 : 일반직의 80% - 주3일 : 일반직의 60% - 주2일 : 일반직의 40%	·공통
심 판 수 당	심판(검차포함)업무자격증 소지자	·월 80,000원	·경륜사업
자격증 수 당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서 전산·방송·시설관련해당분야 근무자	·보수규정 별표7 「제수당지급기준표」 기술업무수당의 지급률 및 지급금액 준용	·경륜사업 -지급대상 (주4일, 주5일 근무자)
특정업무 수 당	예산, 결산, 계약, 감사, 노사, <u>안전보건 관리업무</u> , 경영평가담당직원	·복리후생규정 별표1 「복리후생비지급기준 표」 특정업무수당의 지급금액 준용 ·월 80,000원	·1인 이내
야간 근무수당	22시부터 익일6시까지 근무자 (근로기준법제56조에 의함)	·(가/8)×1.5×야간근무시간	·공통
시간외 근무수당	규정된 근무시간외 초과근무한 직원(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함)	·(가/8)×1.5×시간외근무시간	·공통
휴일 근무수당	휴일에 근무한 직원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함)	·(가/8)×1.5×휴일근무시간	·공통
위험수당	조리사, 조리보조원 ·갑종(전기취급): 월 30,000원 ·을종(보일러 및 위험물취급) : 월 20,000원	·월 20,000원 ·보수규정 별표7 「제수당지급기준표」 위험근무수당의 지급금액 준용 ·전기: 3,300볼트이상 고압	·경륜사업
조장수당	시스템관리, 배송원, 정비원 업무의 조장으로 지정된 자	·월 80,000원	·공영자전거사업
정비(기술) 수당	정비원	·월 20,000원	·공영자전거사업
운전수당	시스템관리원, 배송원	·월 20,000원 ·월 40,000원: 특장차량	·공영자전거사업

1. 제 수당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2. 연차수당, 주휴수당 및 야간·시간외·휴일근무수당의 지급기준란에서 “가”는 일급, 급식보조비, 교통비를 합산한 금액, “40”은 근로자의 1주 법정 근로시간을 말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2조(근무성적의 평정) ① 사업부서의 장은 공무원근로자 등에 대하여 <u>6월 30일과 12월 31일</u>을 기준으로 근무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p> <p>제68조(병가) ④ <u>월간 2일, 연간 7일</u>을 초과한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p>	<p>제42조(근무성적의 평정) ① 사업부서의 장은 공무원근로자 등에 대하여 <u>4월 말일과 10월 말일</u>을 기준으로 근무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p> <p>제68조(병가) ④ <u>월간 2일 이상, 연간 7일 이상</u>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p>

의안번호	제6호
의안제목	복리후생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결결과	원안가결

# 이 사 회 부 의 안

---

## 1. 제안이유

---

### 2022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기준 반영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2.1.27.)에 따라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업무담당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정액 인센티브 지급

## 2. 주요내용

---

### [별표 1] 수당지급기준 중 특정업무수행경비 항목 추가

- 특정업무수행경비 지급대상에 안전·보건관리업무 담당직원 추가

## 3. 참고내용

---

### 신·구 별표 대비표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기준 참고자료(붙임참조)

**붙임**

○ 2022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기준(행안부)

**< 주요내용 >**

2022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2022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기준
<p>&lt; p67 &gt; 지방공사·공단 2-5 특정업무수행경비</p> <p>○ 예산편성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결산·계약·감사·노사·보상 업무·경영평가실무담당직원(과장 또는 팀장 이하)에 대하여 월 8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li> </ul>	<p>&lt; p67 &gt; 지방공사·공단 2-5 특정업무수행경비</p> <p>○ 예산편성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결산·계약·감사·노사·보상 업무·<u>안전보건관리업무</u>·경영평가실무 담당직원(과장 또는 팀장 이하)에 대하여 월 8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li> </ul>

## 복리후생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복리후생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단위: 원)

구분	지급대상	지급액	비고
급식 보조비	·임·직원 ·(연봉계약직 포함)	·월 130,000원	·매월 초 지급
직급 보조비	·이사장 ·상임이사 ·1급 ·2급 ·3급 ·4급 ·5급 ·6~9급 ·연봉계약	·월 650,000원 ·월 550,000원 ·월 500,000원 ·월 400,000원 ·월 250,000원 ·월 155,000원 ·월 140,000원 ·월 125,000원 ·월 125,000원	
명절 휴가비	·임·직원	·연봉제대상 100% ·호봉제 및 계약직 120%	·매년 설날과 추석에 속하는 달에 각각 1/2씩 지급
교통비	·임원 ·1~9급 ·연봉계약	·월 200,000원 ·월 140,000원 ·월 140,000원	·매월 초 지급 공단 관용차량으로 출·퇴근 시 미지급
직책 수행비	·이사장 ·상임이사 ·팀·지점장(2~4급)	·월 800,000원 ·월 700,000원 ·월 200,000원	
자기 계발비	·임·직원 (연봉계약직 포함)	·연 1,000,000원~ ·연 1,950,000원~	·맞춤형 복지카드 차등지급(근속 기간, 가족수 등 감안) 단, 최대 연 1,800,0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특정업무 수행경비	·예산, 결산, 계약, 감사, 노사, <u>안전보건관리업무</u> , 경영평가 담당직원(팀장이하)	·월 80,000원	단, 경영평가담당직원은 2인 이내로 한다.

의안번호	제7호
의안제목	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결결과	원안가결

# 이 사 회 부 의 안

## 1. 제안이유

### □ 공단 시설 대관 유료화를 통한 경영수지 개선 도모

- 지속되는 공단 경영 수지의 악화로 시설 무료대관에 대한 비용처리 부담 증가
  - 전기(조명, 냉·난방 등), 수도, 청소 등
- 대관 가능 시설\*의 유료화를 통한 수익사업으로 경영 부담 경감 도모
  - \* 대관 가능 시설 : 벨로드롬(필드 포함) 및 대강당 등

### □ 대관 가능 시설의 유료화 운영을 위한 운영근거 명확화

- 당초) 총무회계팀-2414(2022.05.15.)호 「창원레포츠파크 시설대관 운영지침」 제정
- 변경) 「창원레포츠파크 시설대관 운영내규」 로의 승격을 통한 운영근거 명확화

## 2. 주요내용

### □ 재산관리규정 제37조 개정

- 제37조(시행내규)제2항 신설
  - “단, 공단 벨로드롬(필드 포함) 및 대강당 등의 시설대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에 따른다.”

#### < 「창원레포츠파크 시설대관 운영내규(안)」 주요내용 >

- 대관 가능일 : 월·화 / 2일 간
  - 공단의 운영상황에 따라 대관가능일은 변동 가능
- 대관시간 : 최소 대관시간 4시간 기준 적용, 4시간 미만인 경우 4시간으로 적용
  - 추가 사용시간은 1시간 단위로 적용,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으로 적용

#### 기본대관료(기본사용료/추가사용료)

(단위: 원)

대관시설	기본사용료	추가사용 기준금액 (1시간 기준)	비 고
벨로드롬 (필드포함)	600,000 (4시간 기준)	150,000	부가가치세 별도
대강당	200,000 (4시간 기준)	50,000	

※ 대관 계약시간(기본 및 추가사용)외의 초과된 사용시간은 별도 초과사용료 징수

## 3. 참고내용

### □ 신·구 조문 대비표

## 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재산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를 내규로 정한다.
- ② 단, 공단 벨로드롬(필드 포함) 및 대강당 등의 시설 대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에 따른다.

## 부 칙

이 규정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7조(시행내규)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를 내규로 정한다.</p> <p><u>&lt;신 설&gt;</u></p>	<p>제37조(시행내규) <u>①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를 내규로 정한다.</u></p> <p><u>② 단, 공단 벨로드롬(필드 포함) 및 대강당 등의 시설 대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에 따른다.</u></p>

의안번호	제8호
의안제목	물품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결결과	원안가결

# 이 사 회 부 의 안

---

## 1. 제안이유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사항 반영(2021년 개정)

- 재물조사 기간을 1년마다 실시함으로써 명확한 재물관리에 만전 도모

#### < 개정주요사항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약칭 : 공유재산법)
  - 제60조(재물조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마다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04.20.>

## 2. 주요내용

---

### 제44조(정기재물조사)제1항 개정

- 당 초) 정기재물조사 시기 : 2년마다 실시
- 변 경) 정기재물조사 시기 : 1년마다 실시

## 3. 참고내용

---

### 신·구 조문 대비표

## 물품관리규정일부개정규정안

물품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중 “2년마다”를 “1년마다”로 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정기재물조사) ① 공단의 모든 물품을 실제의 수량과 장부상의 수량과 대조 확인하는 정기재물조사는 <u>2년</u> 마다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제44조(정기재물조사) ① 공단의 모든 물품을 실제의 수량과 장부상의 수량과 대조 확인하는 정기재물조사는 <u>1년</u> 마다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